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상생성장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관내 시장, 상점가, 골목상권 등 상권을 다양화하고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청년상인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(안 제5조 및 제6조)
- 업무의 위탁 및 실태조사(안 제7조 및 제8조)
- 지원사업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(안 제9조 및 제1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여 관내 상권을 다양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동 제정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,
  - 안 제2조에서는 ‘청년상인’의 정의에 대하여,
 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,
  -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,
  - 안 제5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계획의 수립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,
  - 안 제6조에서는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하여,
  -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,
  - 안 제8조에서는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실시 및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요청에 대하여,
  - 안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 실적 평가 및 결과 반영에 대하여,
  -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대하여,
  - 안 제11조에서는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, 동대문구,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상인과의 상생 성장을 도모하고 향후 지역 상권 활

성화를 선도할 주체로서 청년상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된 안건으로,
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